

아름다운 여수, 행복한 시민



제 203 호
2017년11월1일(수)

여 수 시 보

시 정 방 침

- 1. 함께하는 소통시정
- 1. 활력있는 지역경제
- 1. 수준높은 교육복지
- 1. 앞서가는 해양관광
- 1. 걱정없는 안전사회

■ 발행인 : 여수시장 ■ 발행소 : 공보담당관실 / 여수시 시청로 1(학동) ☎ 659-3023 FAX) 659-5803

목 차

【공 고】

- 여수시 공고 제2017-2098호 여수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) 결정(변경) 안 재열람 공고 /3
- 여수시 공고 제2017-2106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(영업소폐쇄) 공고 /5

회 판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여수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

여수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) 결정(변경) 안 주민 등의 의견청취 재열람공고

여수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) 결정(변경) 안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5조, 제28조,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 의견청취(여수시공고 제2017-346호)하였으나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항(변경) 반영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재열람공고합니다.

2017.11. 1.

여 수 시 장

1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가. 용도지역

1)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조서 - 변경없음

나. 용도지구

1) 용도지구 결정(변경) 조서

■ 경관지구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지구명	지구의 세분	위 치	면적 (㎡)	연장 (m)	폭원 (m)	최초 결정일	비고
신설	①	종고산경관지구	자연경관지구	종고산 도시자연공원구역 인접 자연녹지지역	73,915				
신설	②	울촌·소라경관지구	수변경관지구	울촌면, 소라면	2,447,764		100		
신설	③	웅천·신월경관지구	수변경관지구	신월동 일원	187,436				
신설	④	소경도경관지구	수변경관지구	소경도, 가장도 일원	513,611				
신설	⑤	신월경관지구	시가지경관지구	신월동 193번지	146,813				
신설	⑥	우두경관지구	시가지경관지구	돌산읍 우두리 806-9번지	110,219				
기정	1	남해경관지구	수변경관지구	낙포동, 신덕동, 만흥동 인접 해변	547,307	10,500	50	국토해양부 2010-665	
변경	1	남해경관지구	수변경관지구	낙포동, 신덕동, 만흥동 인접 해변	1,529,186				
기정	2	돌산경관지구	수변경관지구	돌산해변	710,342	10,500	50	천고-106호 15.04.30	
변경	2	돌산경관지구	수변경관지구	돌산해변	1,726,855				

■ 경관지구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 표시 번호	지구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①	종고산경관지구	자연경관지구 신설 (A=73,915㎡)	•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자연경관유지 및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한 자연경관지구 지정
②	울촌소라경관지구	수변경관지구 신설 (A=2,447,764㎡)	• 울촌면, 소라면 일대의 수변축 해안 등의 수변경관을 유지하고 조망권 확보를 위하여 수변경관지구 지정
③	웅천·신월경관지구	수변경관지구 신설 (A=187,436㎡)	•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자연적·생태적 경관을 유지하고 양호한 인공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수변경관지구로 지정
④	소경도경관지구	수변경관지구 신설 (A=513,611㎡)	• 소경도 및 자연녹지지역의 자연경관 및 수변경관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수변경관지구로 지정
⑤	신월경관지구	시가지경관지구 신설 (A=146,813㎡)	• 일반주거지역의 기존시가지에서 도시이미지를 제고를 위하여 양호한 경관을 유지하고자 시가지경관지구로 지정
⑥	우두경관지구	시가지경관지구 신설 (A=110,219㎡)	• 일반주거지역의 기존시가지에서 도시이미지를 제고를 위하여 양호한 경관을 유지하고자 시가지경관지구로 지정
1	남해경관지구	수변경관지구 면적 변경 (A=1,529,186㎡)	• 남해경관지구의 수변경관관리를 위하여 기존 폭원을 확대하여 수변경관지구 변경
2	돌산경관지구	수변경관지구 면적 변경 (A=1,726,855㎡)	• 돌산경관지구의 수변경관관리를 위하여 기존 폭원을 확대하여 수변경관지구 변경

■ 고도지구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지구명	지구의 세분	위 치	고도제한 내용	면적 (㎡)	최초 결정일	비고
신설	①	소호1고도지구	최고고도지구	안산동 738번지	표고 100m이하	89,747		건축높이 제한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
신설	②	소호2고도지구	최고고도지구	소호동 제2종일반주거지역	표고 120m이하	292,692		건축높이 제한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
신설	③	신월1고도지구	최고고도지구	신월동 292-6	20m 이하	154,691		건축높이 제한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
신설	④	신월2고도지구	최고고도지구	신월동 299-9	12m 이하	39,647		건축높이 제한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
신설	⑤	신월3고도지구	최고고도지구	국동 제2종일반주거지역	표고120m이하	433,166		건축높이 제한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
신설	⑥	국동고도지구	최고고도지구	국동항 일원	32m 이하	495,281		건축높이 제한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

■ 고도지구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 표시 번호	지구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①	소호1고도지구	최고고도지구 신설 (A=89,747㎡)	•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토지이용현황과 기존 구릉지에 입지해 있는 공동주택을 고려하고 산림조망권 저해 및 경관보호를 위하여 최고고도지구로 지정
②	소호2고도지구	최고고도지구 신설 (A=292,692㎡)	•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토지이용현황과 기존 구릉지에 입지해 있는 공동주택을 고려하고 산림조망권 저해 및 경관보호를 위하여 최고고도지구로 지정
③	신월1고도지구	최고고도지구 (A=154,691㎡)	• 일반공업지역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고 해안도로의 경관 및 수려한 자연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최고고도지구로 지정
④	신월2고도지구	최고고도지구 (A=39,647㎡)	• 자연녹지지역과 자연취락지구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고 해안도로의 경관 및 수려한 자연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최고고도지구로 지정
⑤	신월3고도지구	최고고도지구 (A=433,166㎡)	• 기존 구릉지에 입지해 있는 공동주택을 고려하고 산림조망권 저해 및 경관보호를 위하여 최고고도지구로 지정
⑥	국동고도지구	최고고도지구 (A=495,281㎡)	• 국동다기능어항, 경도관광단지 등 시민 및 관광객에게 개방적인 시야확보 등 중저층 개발 유도하기 위하여 최고고도지구로 지정

■ 취락지구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지구명	지구의 세분	위 치	제한 내용	면적 (㎡)	최초 결정일	비고
신설	①	화양취락지구	자연취락지구	화양면 안포리 971-14	-	6,139		
기정	8	후동지구	자연취락지구	울촌면 취적리 284-3	-	101,430		
변경	8	후동지구	자연취락지구	울촌면 취적리 284-3	-	125,349		

■ 취락지구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 표시 번호	지구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①	화양취락지구	자연취락지구 신설 (A=6,139㎡)	•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는 밀집취락지의 주거환경개선 및 소득증대 향상을 위해 자연취락지구로 신규지정
8	후동지구	자연취락지구 신설 (A=125,349㎡)	• 자연취락지구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시설 등의 설치를 위해 자연취락지구로 편입

2. 여수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) 결정(변경) 도면: 게재 생략
3. 열람장소: 여수시청 도시계획과
4. 공고기간: 2017.11. 1. ~ 2017.11.15.(14일간)
5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시 홈페이지(<http://www.yeosu.go.kr/>) 게재되어 있으며, 도시계획과(☎ 061-659-4011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(영업소폐쇄) 공고

식품위생법 제75조(허가취소 등)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(영업소폐쇄)하기에 앞서 같은 법 제81조(청문)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코자 청문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, 우편물 반송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청문사항을 공시송달 한 결과 기간 내 의견 제출이 없고 청문에 불참하였기에,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(영업소폐쇄)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17 년 11월 01일

여 수 시 장

1. 제 목 :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
2. 관련근거 :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 제37조, 제75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14조
3. 행정처분 내용

업 종	업 소 명	대표자	업소 소재지	처분의 원인	처분결과
음식점	갯마을횃집	김백년	여수시 화양면 옥천로 1043-22	영업장 시설물 전부철거	영업소폐쇄 (2017.09.26)
“	허브리	이순옥	여수시 을촌면 내리길 106-1	영업장 시설물 전부철거	영업소폐쇄 (2017.10.12)

4. 공고기간 : 2017. 11. 01 ~ 2017. 11. 15. (15일간)
5. 고지사항 :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온라인(<http://www.simpan.go.kr>)으로 처분청 또는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.
6. 문 의 처 : 여수시청 식품위생과 강정욱 (☎ 061- 659- 4237) 끝.